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8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한민수·조 국·허 영

박지원 • 송옥주 • 박상혁

황 희・임오경・이병진

박희승 • 이연희 • 한준호

정일영 · 김영호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함) 및 업무보고서를 각각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사업보고서등의경우 주로 주권상장법인 등이 재무적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하는반면, 업무보고서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주주에 관한 사항 등 업무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평가 지표로서 ESG(Environment al·Social·Governance,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국내시장을 규율하는 현행법이 기업공시제도를 기업의 재무적성과로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ESG를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개선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등과 업무보고서의 기재 대상에 ESG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후단신설 및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업무보고서의 내용에는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비재무적지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비재무적 지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0조 후단 중 "제3호 및 제3호의2"를 "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 용례) 제33조, 제159조제2항제5호 및 제160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이후 금융투자업자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장법인이 사업보 고서 또는 반기·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	①
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	
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	
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	
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u>o</u>]
<u><후단 신설></u>	경우 업무보고서의 내용에는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
	회ㆍ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비
	재무적 지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u>다.</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2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5. (생략)

③ ~ ⑦ (생 략)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 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 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 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 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 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 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 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 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 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 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 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

5.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기업지배구조와 관련
된 비재무적 지표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
출)

1. ~ 4. (현행과 같음)

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u>제3호 및 제</u> <u>3호의2</u>는 제외한다)·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u>제3호, 제3</u>
호의2 및 제5호